

#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88
-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 외 15명
- 발 의 일 : 2018년 10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10월 29일

## 2. 주문

- 국가의 앞날을 책임질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촉구함.

## 3. 제안이유

-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여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각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다수의 부처가 청년문제를 나누어 담당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청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고 있음.
-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국가적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률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친 다양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5. 검토 의견

- 본 건의안은 최근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국회에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김혜영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과 7개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 발 의 경 과 >

법률명	발의자	발의일자	회부일	상정일	소관위
청년 기본법안	신보라의의원 등 122인	2016.05.30.	2016.6.13.	2016.11.3.	기획재정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6.08.24.	2016.9.27.	2016.11.17.	여성가족위원회
청년정책기 본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6.08.17.	2016.9.27.	2016.11.17.	여성가족위원회
청년발전기 본법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6.12.02.	2016.12.5.	미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2017.04.13.	2017.4.17.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발전지 원기본법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2017.06.30.	2017.7.3.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8.2.19.	2018.2.20.	2018.9.19.	기획재정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2018.5.21.	2018.8.31.	미상정	여성가족위원회

**< 청년 관련 기본법 발의 현황 >**

구분	신보라의원안 (‘16.05.30.)	박주민의원안 (‘17.04.13.)	강창일의원안 (‘17.06.30.)	채이배의원안 (‘18.02.19.)	박홍근의원안 (‘16.08.17.)	이원욱의원안 (‘16.08.24.)	김해영의원안 (‘16.12.02.)	이명수의원안 (‘18.05.21.)
제명	청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년의 정의	19세~39세	19세~34세	18세~39세	18세~34세	19세~34세	19세~39세	19세~34세	19세~34세
기본계획 수립주체	기재부장관	기재부장관	기재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심의 및 조정기구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발전지원 위원회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발전 위원회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	대통령 소속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 기본시책	참여확대 고용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문화활동 지원 능력개발 지원 심리상담 지원 봉사활동 지원	정책결정 참여 능력개발 지원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지원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동 지원 권리보호	권리보호 정책결정 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문화활동 지원 청년단체 지원	권리보호 정책결정 참여 정치참여 고용촉진 인적자원 개발 복지증진 문화활동 지원 청년단체 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봉사활동 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주거안정 금융지원 출산 등 지원 복지증진 청년문화 국제협력	정치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지원 국제협력 봉사활동 지원	고용촉진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청년지원금	-	청년지원금	-	-	청년수당	청년생활 지원금	-	-
기금 설치	-	-	청년발전 지원기금	청년지원 기금	-	-	-	-

- 청년 실업, 빈곤 등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 마련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대로, 언론보도<sup>1)</sup>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은 23%이고,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2배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또한, 청년의 주거 빈곤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청년 및 전체 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108.9
전체	3.6	3.7	3.4	3.2	3.1	3.5	3.6	3.7	3.7	3.6
청년	8.1	8.0	7.6	7.5	8	9	9.1	9.8	9.8	10.1

주: 청년실업을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 한편,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불평등의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특히 다음세대인 청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일자리 규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에서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등과 같은 계층의 정책적 지원은 법적 근거<sup>2)</sup>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나, 청년의

1) [출처: 중앙일보] 청년실업률 10%...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2018.9.12

2)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경우에는 소관 법령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청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방지, 세대균형적인 국정 운영 및 청년정책의 통일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청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청년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법 안	발의자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의원 등 122인	<p>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p> <p><b>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b></p> <p>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안 제5조).</p> <p>라.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안 제7조).</p> <p>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p> <p>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p> <p>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b>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b>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p> <p>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p> <p>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계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p> <p>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p>
청년기본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p>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p>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함(안 제6조).

라. 매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으로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당은 청년정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학 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p>지역청년인재 및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등 취약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자립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p> <p>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p> <p>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p> <p>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p> <p>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적인 청년문화를 창조·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5조).</p> <p>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p> <p>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p> <p>머.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p>
<p>청년정책기본 법안</p>	<p>박홍근의원 등 10인</p>	<p>가. 청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p>

		<p><u>수립·시행</u>하고,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p> <p>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p> <p>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정책의 분석·평가에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p> <p>마.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u>, 청년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청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p> <p>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p> <p>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p> <p>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p> <p>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청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p>
청년발전기본 법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p>가. 이 법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p>

		<p>함(안 제1조).</p> <p>나. <u>“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u></p> <p>다. <u>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u>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p> <p>라. <u>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u>를 두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p> <p>마. 국무총리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는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靑年週刊)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p> <p>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합의체를 구성할 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원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p> <p>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p>
청년기본법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p>가. 이 법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u>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u></p> <p>다. <u>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u>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p> <p>라. <u>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u></p> <p>마.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청년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p>

		<p>청년참여회의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p> <p>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7조).</p> <p>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p> <p>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31조).</p> <p>자.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안 제32조).</p>
<p>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p>	<p>강창일의원 등 12인</p>	<p>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b>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b></p> <p>다. 매년 7월을 청년의 달로 함(안 제5조).</p> <p>라. <b>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b>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p> <p>마.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p> <p>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청년정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p> <p>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b>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b>, 시·도지사는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p> <p>아. 청년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p> <p>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고, 청년의 참여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p>

		<p>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p> <p>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p> <p>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p> <p>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보장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에게는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p> <p>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p> <p>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정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보장·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9조).</p> <p>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p> <p>너.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1조).</p> <p>더.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p>
청년기본법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p>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u>청년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u></p> <p>다. <u>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u>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p> <p>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p> <p>마. <u>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u></p>

		<p><u>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u>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p> <p>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p> <p>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p> <p>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p> <p>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p> <p>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의 안정과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 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원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p> <p>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p> <p>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p> <p>파.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1조).</p> <p>하. 정부는 해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청년지원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p>
청년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p>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p> <p>나.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p> <p>다. <u>“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u> 다만,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p>

		<p>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제3항).</p> <p>라.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안 제4조 및 제5조)</p> <p>마.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안 제7조).</p> <p>바. <b>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b>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p> <p>사.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p> <p>아. <b>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b>,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p> <p>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 관련 각 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5조)</p> <p>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p> <p>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p> <p>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p>
--	--	--

		<p>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p> <p>하.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청년정책에 관한 국회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p>
--	--	--